

이천시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1. 12.
제출자 : 이천시장

□ 제정이유

- 청소년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청소년 시책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함.
-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청소년의 정의 : 9 ~ 24세의 청소년(안 제2조)
- 기능 : 청소년관련 시책자문 및 의견 제시 등(안 제3조)
- 구성(안 제4조)
 - 구성 :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.
 - 자격 :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
 -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위원 2명은 당연직 위원이 됨
- 위원의 임기 :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(안 제6조)
- 간사 : 간사1인, 청소년업무담당주사(안 제7조)
- 회의 등(안 제8조)
 - 분기별 1회 원칙, 재적위원의 3분의 1, 시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시 소집
 -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.
 -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한다.
-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가 청소년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·반영하여 청소년중심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천시차세대위원회를 설치,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.

제3조 (기능) 이천시차세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시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
2. 지역청소년문제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의견제시
3.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상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
4. 타 자치단체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
5. 관내 기관등에 청소년업무에 대한 의견제시

제4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남·여 각 1인으로 한다.
③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위원 2명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.

제5조 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.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위원의 임기)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

②위원장·부위원장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7조 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
제8조 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
2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한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사회복지과
임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사회복지과장 서 광 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청소년담당 박 회 자
	담당자 성명·전화	민승례 (644-2231)